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조치사항

2024. 12. 23.

관계기관합동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조치사항(요약)

	주요 내용	조치사항
I. 맞춤형 채무조정(119Plus) 관련		
1	경영실태평가 개선	은행 검사업무 안내서 개정(금감원)
2	채무조정 관련 임직원 면책	공문을 통한 안내(금감원)
II.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관련		
1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은행별 관리시 예외로 인정
2	DSR 규제 제외 명확화	감독규정 개정(금융위)
3	채무조정 관련 임직원 면책	공문을 통한 안내(금감원)
4	건전성 관련 규제 예외	유권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금융위·금감원)
5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기간 연장 조치	지침개정(중기부)
III. 상생 보증·대출 관련		
1	보증료율 인하 등	보증료율 인하 등(서금원, 지신보)
IV.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 제공 관련		
1	컨설팅 센터 설립 인센티브 방안 검토	점포폐쇄 공동절차 예외 등 검토(금융위)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허용	샌드박스, 부수업무 허용 등 추진(금융위)
V. 소상공인 금융지원 관리체계 마련(공통)		
1	소상공인 금융지원 관리체계 마련	실적관리 체계 마련(서금원 등)

1. 맞춤형 채무조정(119Plus) 관련

1 경영실태평가 개선

- (현행) 금융감독원 은행권 경영실태평가 시 개인사업자대출 119의 ①전체 지원실적과 ②이자감면 지원실적만을 반영 중*

* 경영관리 중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내 항목으로 포함

- (개선) 평가지표 중 개인사업자대출119 전체 실적을 장기분할상환 대환 실적으로 대체하여 평가 실효성 제고

※ 경영실태평가 개선(안)

평가지표 (개선 前)	평가지표 (개선 後)
① 지원실적(금액) 증감률 지원실적(건수) 증감률	① 장기분할상환 대환*(금액) 증감률 장기분할상환 대환*(건수) 증감률
② 이자감면(금액) 증감률 이자감면(건수) 증감률	② 이자감면(금액) 증감률 이자감면(건수) 증감률

* 5년 이상 장기분할상환으로 대환하는 경우만 실적으로 포함

- (조치계획) 「은행 검사업무 안내서」 개정(금감원, '25.3~4월)

2 채무조정 관련 임직원 면책

- (현행) 장기 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적극적 채무조정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임직원 책임 문제 대두 가능

- (개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은행 임직원에 면책 부여

* 현행 규정상으로도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는 면책 대상에 해당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7조의2제1항>

제27조의2(면책특례) ①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하지 아니한다.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

- (조치계획) 공문을 통한 안내*(금감원, '25.3~4월)

*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시에도 여신업무 담당자 면책 등을 안내한 사례 有

II.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관련

1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 예외

- (현행) 개인사업자대출에서 가계대출로 전환 시 은행별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 대상에 포함
 - 본래 사업 용도로 실행된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폐업으로 인해 가계대출로 분류되어 은행별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에 애로
- (개선) 은행별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시 예외로 인정

2 DSR 규제 제외 명확화

- (현행) 현재 소상공인이 경영난으로 폐업하여 기 보유한 사업자 대출을 채무조정 목적의 가계대출로 대환할 경우 DSR 적용 제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중('24.6월, 은행연합회 Q&A 등)
 - 다만, 상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한정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4호>

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한다.

- (2)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개선) 신용·보증부 대출의 경우 담보에 비해 상환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아 10년 이상 조건 폐지(담보대출의 경우 유지)
- (조치계획) 은행업감독규정 개정(금융위, '25.3~4월)

3

채무조정 관련 임직원 면책

- (현행) 장기 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적극적 채무조정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임직원 책임 문제 대두 가능
- (개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은행 임직원에 면책 부여
 - * 현행 규정상으로도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는 면책 대상에 해당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7조의2제1항>

제27조의2(면책특례) ①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하지 아니한다.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

- (조치계획) 공문을 통한 안내*(금감원, '25.3~4월)

*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시에도 여신업무 담당자 면책 등을 안내한 사례 有

4

건전성 관련 규정 예외

- (현행) 가계여신 중 장기 분할상환 대출 등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주의, 고정이하 등으로 분류*
 - *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 채권 재조정 이후 정상적으로 상환할 경우 건전성 분류를 상향
- (개선) 소상공인 지원 취지를 감안하여 건전성 분류 요건 완화 등을 검토
 - * (예시) ① 대환 전 정상으로 분류된 차주는 대환 이후에도 정상으로 분류, ② 대환 전 기업여신(개인사업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건전성 분류 상향 기준을 완화(예, 6개월)
- (조치계획)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금융위·금감원, '25.3~4월)

5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기간 연장 조치

- (현행)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이용 중, 폐업한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 지원조건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95 또는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인 사람

- ⇒ 폐업한 경우, 기존 보증부대출(사업자대출) 금액의 잔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5년 이내의 개인여신 보증서 신규 발급

※ 적용 금리 : CD금리(91일) + 최대 1.6% (12.17일 기준, 4.98% 이내)

- (개선) 기존 보증부대출 잔액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기간을 현행 최대 5년 → 최대 7년으로 연장(※ 3년간 한시 적용)

※ (참고) 은행권 지원 : 금리 우대 ⇒ 금융채 5년물 금리^{5년간 고정} 뒤 변동 + 0.1%p

- (조치계획) 중기부 지침 개정(~'25년 1분기)

III. 상생 보증·대출 관련

1

보증료율 인하 등

- (현행) 은행권의 출연을 통한 보증재원 마련 및 공급 시 보증 잔액 증가로 인해 법적비용 등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 또한, 은행이 심사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전산 개발 및 면책 사유 명확화 등 필요

- (개선) 은행들의 적극적인 공급 유도를 위해 보증기관도 상생 협력방안* 마련

* (예) 보증기관이 수취하는 보증료율 인하(서금원 1% → 0.5%, 지역신보 1% → 0.8%)

- 은행권과 함께 전산 개발 및 면책사유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

IV.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 제공 관련

1 컨설팅 센터 설립 인센티브 방안 검토

- (현행) 은행권은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별 컨설팅센터 추가 설립* 등을 검토 중

* 현재 9개 은행 35개 센터 운영 중

- 일부 은행은 기존 점포를 컨설팅 센터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

* (예) 단, 금융소비자 불편 최소화, 금융접근성 유지를 위해 고기능 무인 자동화 기기(STM, ITM) 등을 운영하고 필요시 안내인력 배치

- (개선) 은행권이 기존 점포를 컨설팅 센터로 전환시 점포폐쇄 절차 등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검토

* (예)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적용 예외 등(다만, 기존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서비스 허용

- (현행) 은행권은 일부 비금융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제한적으로 영위중

- (개선)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은행을 통한 경영 지원서비스 공급기능 활성화 추진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 및 경영부담 지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 플랫폼 및 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

* 주문결제 플랫폼·지역관광 플랫폼, 배달 플랫폼을 활용한 식자재 주문서비스, 유동성 지원을 위한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 은행을 활용한 마케팅 및 플랫폼 데이터 통합조회 서비스 등

- 카드 단말기 지원, 카드매출 바로입금 등 계열 금융사 연계 서비스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복합금융상품 개발 추진

- (조치계획) 은행이 비금융분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권 샌드박스 활용, 부수업무 등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동시 추진(~'25년 1분기)

V. 소상공인 금융지원 관리체계 마련(공통)

- **(현행)**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실적 관리를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수행 중*
 - * (은행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2.1조원) 등, (금감원) 개인사업자대출 119 등, (보증기관) 은행별 출연 등에 따른 보증부 대출 공급규모 등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여러 기관이 각 부문별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일원화된 관리체계 필요
- **(개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실적 등 총괄적으로 관리
 - 유관기관의 협조*를 기반으로 서금원에서 집행현황·실적 관리 등을 전담하게 하고, 금융위 및 관계부처와 주기적으로 점검
 - *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방안 시행 前 서금원과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TF 등을 구성하여 기관 간 이행실적 제출 방식, 주기 등 관련 업무 프로세스 확립
- **(조치계획)** 서금원·은행연 등으로 구성된 TF 구성 및 기관 간 업무프로세스 마련(~'25년 1분기)